

**투자위험등급 :**  
**1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트러스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 50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 50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50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트러스톤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http://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 준 일 : 2011. 9. 9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1. 9. 14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모집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이므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상세목차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6. 집합투자업자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

## III .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4. 전환 절차 및 방법

## IV. 요약 재무정보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트러스톤 다이나믹 코리아 50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A4426
A	A4427
B	A4428
C1	A4429
C2	A4430
C3	A4431
C4	A4432
W	A6124
F	A6402

### 2. 모집예정기간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이므로 모집예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주 1)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3. 모집예정금액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이므로 모집규모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주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펀드존속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 의거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 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 될 수 있 습니다.

## 5.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혼합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 6.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트러스톤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하나증권빌딩 10 층 (☎ 6308-0500)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지분증권 (주식 등)	50%이상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2) 채권	95%이하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신용평가등급 A-이상,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주1) 투자대상은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중 주로 투자하는 자산에 대하여 표기하였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주식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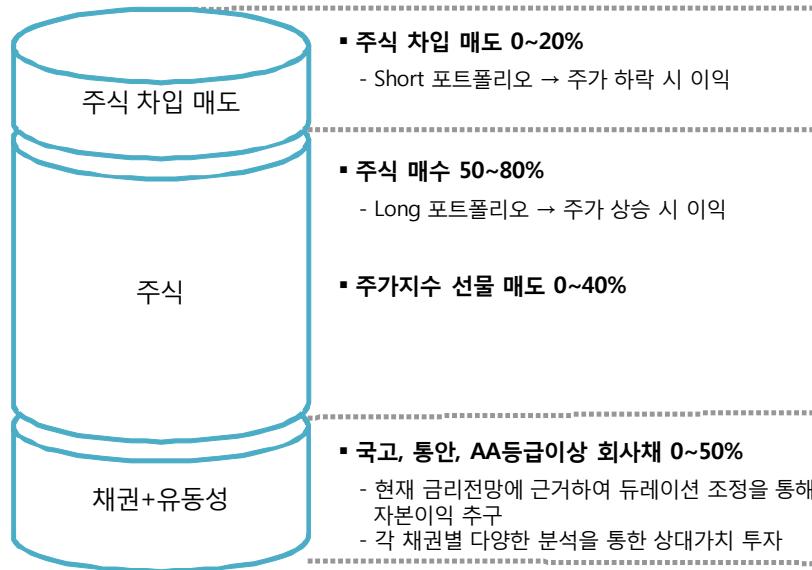
\* 비교지수 : KIS국고채1~2년 지수×80% + KOSPI×20%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나. 투자전략 및 위험 관리

### 1) 투자전략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95%이하를 채권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주식 투자 전략]

In-house research(회사 내의 리서치 조직)를 바탕으로 거시경제 분석과 Bottom-up 분석(개별기업 분석)을 병행하여, 장기적으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업을 선택, 분석하여 내재가치 이하에서 투자합니다.

- **Long-Short 전략** :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롱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숏 포트폴리오를 구축합니다.
- **Pair Trading 전략** : 사업환경이 유사하고 가격의 상관 관계가 비교적 높은 동일 산업 내 종목으로 각각 롱과 숏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 **Enhanced 전략** : 저평가 영역에 있는 가치주 중심으로 롱 포지션 구축합니다.

#### [채권 운용 전략]

저평가된 채권을 발굴하여 상대가치 투자를 하고 금리 전망에 근거한 듀레이션 조정을 통해 자본이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 **듀레이션 전략** : 금리전망에 근거하여 단계적, 점증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듀레이션 조정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합니다.

#### \*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 :

듀레이션은 단순히 최종 원금상환 시점을 의미하는 만기와는 달리 모든 현금수입 발생시기와 규모

등 현금수입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고 있는 개념으로 만기, 채권수익률 및 표면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채권의 경우 듀레이션은 약 2.7년입니다. 따라서 **채권의 금리변동 위험측정 수단으로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가 상승(하락)할 때 채권가격의 하락(상승)폭이 커집니다.**

□ **수익률곡선 전략** : 채권은 액면가와 이자가 정해져 있으며, 할인식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기가 다가올수록 채권가격은 오릅니다. 따라서 채권의 만기가 줄어들면서 마치 돌이 굴러 떨어지듯이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여 자본이익 발생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를 채권의 롤링(Rolling) 효과라고 하며, 수익률 곡선상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의 채권을 매수하여 롤링효과를 누리는 채권투자전략입니다.

※ 비교지수 : KIS 국고채 1~2 년 지수×80% + KOSPI×20%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이 지수는 다른 지수나 수익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비교지수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http://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선정사유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국내 주식 과의 비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국내증권시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KOSPI지수를 선정하였으며 채권에 95%이하 투자하므로 채권시장 수익률과의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KIS국고채1~2년 지수를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내 상장 주식을 차입할 예정이며, 주가지수선물매도를 병행함으로써 주식에의 순투자금액<sup>1)</sup>을 0~50% 이내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를 KIS국고채1~2년×80% + KOSPI×20%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1) 주식 순투자금액 = 주식매수 평가금액-주식차입평가금액-주가지수선물매도금액

2) 위험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은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시장에 상장, 등록되어 있는 지분증권 등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혼합형)로서 투자한 지분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 4. 주요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와 수익률 괴리 가능성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 투자신탁이 아닙니다. 비교지수의 업종 구성 및 종목 비중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비교지수와의 수익률 괴리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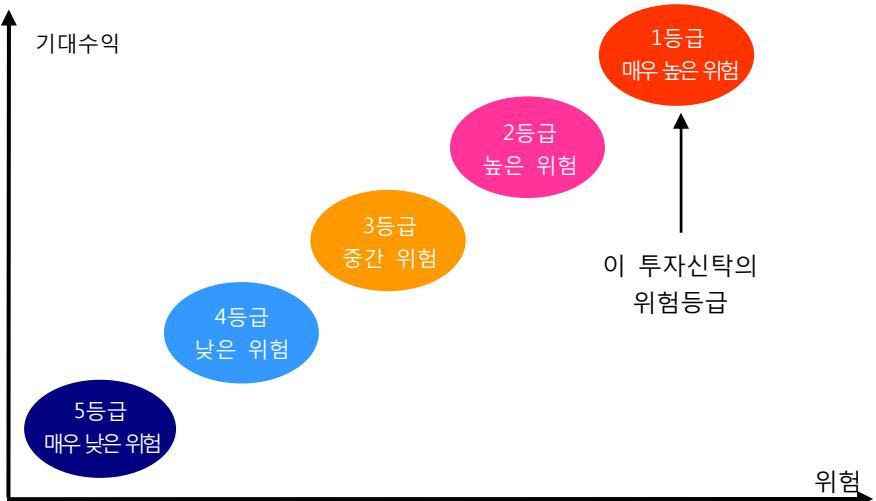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로 인한 위험도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혼합형)으로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 하다고 생각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6. 운용전문인력

###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1.09.08 현재, 단위:개, 억원)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용상민	42세	본부장	7	1,360	<b>학력</b>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 고려대학교 회계학 석사 <b>경력</b> 00.04 ~ 04.08 대신경제연구소 기업분석 04.08 ~ 現 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b>자격증</b> 투자자산운용사
여종훈	38세	채권 운용 팀장	14	5,154	<b>학력</b>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 <b>경력</b> 99.07~08.04 교보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팀 08.05~10.12 NH-CA 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11.01~현재 트러스트자산운용 채권운용팀 <b>자격증</b> 투자자산운용사 공인신용분석사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 운용으로 주식운용본부 및 채권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 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성명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용상민	1,150 억원

###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7. 투자실적 추이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 신규펀드이므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 신규펀드이므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 III. 매입 · 환매 관련 정보

### 1. 보수 및 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별로 수익증권이 발행되며, 종류별 보수 및 수수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A	B	C1	C2	C3	C4	W	F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없음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2년 이내 환매시 환매금액의 1.0% 이내					없음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90일 이상 : 없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지급 시기
	A	B	C1	C2	C3	C4	W	F	
집합투자업자보수	0.600	0.600	0.600	0.600	0.600	0.600	0.600	0.60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500	0.750	1.500	1.250	0.990	0.900	0.000	0.060	
신탁회사 보수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0.015	
기타비용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0.040	
<b>총 보수 비용(TER)</b>	<b>1.170</b>	<b>1.420</b>	<b>2.170</b>	<b>1.920</b>	<b>1.660</b>	<b>1.570</b>	<b>0.670</b>	<b>0.730</b>	
<b>증권거래비용</b>	<b>0.370</b>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 2)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3) 증권거래비용은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천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A클래스	222	479	756	1,545
B클래스	149	463	800	1,750
C클래스	228	619	985	2,014
W클래스	70	220	383	856
F클래스	77	240	417	930

주 1) 투자가 1,000 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직 ·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 ·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 · 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2) B 클래스는 10년 동안 보유하는 것을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주 3) C 클래스는 수익자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전환되는 수익증권으로서 투자자가 수익증권

을 10년 동안 보유하는 것을 가정하여 전환되는 수익증권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2. 과세

### 가. 과세에 관한 사항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음	-	-
수익자	원천징수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이익금을 지급받는 날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판매 절차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p>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text{기준가} = \frac{\text{펀드의 순자산 총액}}{\text{총 좌 수}}$ $\text{실제 기준가} = \frac{\text{펀드의 순자산 총액}}{\text{총 좌 수}} \times 1,000$ <p>1좌=1원 1,000좌 기준=1,000원</p>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포함]은 매일 산정하며, 보수,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trustonasset.com">www.trustonasset.com</a> ) · 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시 됩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 나. 매입 및 판매 절차

#### 1) 매입

##### (1) 매입방법 및 절차, 매입신청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하며 판매회사에서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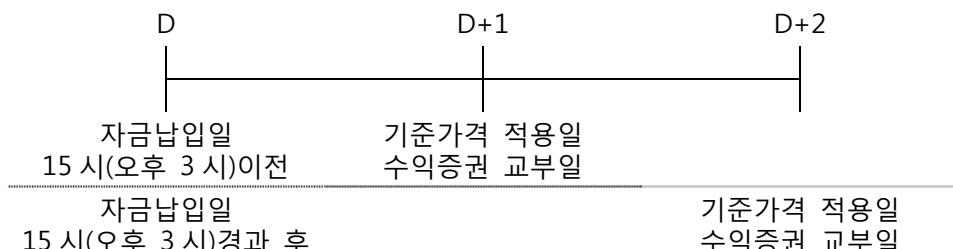
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매입자격

종 류	가입자격
A 클래스 (펀드코드 : A4427)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정구되는 수익증권
B 클래스 (펀드코드 : A4428)	가입제한은 없으며, 후취판매수수료가 정구되는 수익증권
C1 클래스 (펀드코드 : A4429)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2클래스 (펀드코드 : A4430)	C1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C3클래스 (펀드코드 : A4431)	C2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C4클래스 (펀드코드 : A4432)	C3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수익자
W클래스 (펀드코드 : A6124)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F클래스(펀드코드 : A6124)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5시[오후3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② 15시[오후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③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1)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오후 3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2) 환매

(1)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신청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① 15 시[오후 3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② 15 시[오후 3 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환매청구일 15 시(오후 3 시)이전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 수령일
환매청구일 15 시(오후 3 시)경과 후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 수령일
주1)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5시[오후 3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청구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4. 전환 절차 및 방법

### 가. 전환절차, 방법 및 전환시 기준가격

-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에 따라 다음 경우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않습니다.
  - C1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2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 C2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3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 C3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4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② ①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 처리합니다.
- ③ ①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④ 판매회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 ①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IV. 요약 재무재표

- 신규 펀드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